【인천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 공고 제2023-24호】

2024년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인천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훈령 제1255호「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을 공고합니다.

2023. 12. 18.

인천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장

1.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 인원

채용 분야	근무 기간	채용 인원	담당업무	비고
수산종자 생산방류	2024. 1. ~ 8. (채용일로부터 8개월)	2명	-수산생물 사육보조 -사육시설 정비 및 청소 등	

※ 사업 조기 종료 시, 채용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2. 근거법령 및 지침

○「근로기준법」 제16조, 제17조. 제34조, 제50조 내지 제63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관한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인천광역시 훈령 제1255호「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 2024년도 기간제근로자 사전 심사 결과

3. 응시자격: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2024. 1. 4.)

[공통 기준]

○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1조(채용 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10.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만 18세 이상인 자

○ **현장 업무에 필요한 기초체력을 지닌 자**

○ 질병이나 전염병 감염이 없고, 채용 즉시 업무가 가능한 자

4. 근무 조건 및 업무 내용

○ 근무장소: 인천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247번길 313)

○ 근무기간: **2024. 1. ~ 8.(채용일로부터 8개월)**

※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도 있음.

○ 근무시간: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수산생물 사육 특성상 근무시간 조정이나 평일/주말 초과근무가 가능한 자

○ 업무내용

- 수산생물 사육보조 : 먹이생물, 사료 공급 및 사육환경 관리
- 사육시설 정비 및 청소 등 : 각종 사육수조 및 도구 청소, 주변 환경관리

※ 1.5m~3m 가량의 수조를 넘나들며, 5~10kg 정도의 물이 담긴 양동이를 나르는 일이 많음

○ 보수

구 분		지급기준	비고
보수성격 임금	기 본 급	인천광역시 기본급(1,941,080원)	
	시간외수당	해당시간×통상시급×150%	
	야근근무수당	해당시간×통상시급×200%	
	휴일근무수당	해당시간×통상시급×150%	
	연차유급수당	통상일급×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복리후생 성격 임금	급 식 비	140,000원/월	
	목 욕 비	120,000원/월	
	위험수당	140,000원/월	
	현장 근로비	70,000원/월	

※ 그 외 특수지 수당(30,000원/월), 가족수당(가족수에 따라 차등지급) 지급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인천광역시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기간제 복무지침 및 임금지급기준(안) 등)에 준함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 공고문에 제시된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판단함.

○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 인원보다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평가 후 3배수로 선발함(동점자 발생 시 3배수 이상 합격).

※ 서류평가 기준: 가점 및 법령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자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은 10분 이내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며,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산업 안전 지식과 행동 요령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 요소

①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② 산업안전 지식과 행동 요령,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⑥ 전공지식

※ 불합격 기준

○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자는 채용하지 않음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후 채점표를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순위 확정

6. 채용 일정

채용 공고 및 접수	⇨	서류전형(1차) 합격자 결정 및 통보	⇨	면접시험 (2차)	⇨	최종합격자 발표
'23. 12. 18.(월) ~ 12. 27.(수) ※ **접수: 12. 19.(화) ~ 27.(수)** **(토요일, 공휴일 제외)**		'23. 12. 28.(목) **※개별 연락**		'24. 1. 4.(목)		'24. 1. 5.(금)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2023. 12. 19.(화) ~ 12. 27.(수)

접수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자원조성팀) 032-440-6412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247번길 313**, (우)23121 인천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 자원조성팀 기간제근로자 채용 담당자 앞

○ 접수장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만 유효)

나.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 되므로, 합격 발표 및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근무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현장 업무 수행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 후 원서를 제출해야 함.

○ 제출한 응시서류는 발표 **다음 달부터 14일까지** 불합격자에 한하여 **반환요청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음.**

8.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서류전형 시 심사 근거 자료로 사용됨으로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제출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정리 후, 제출

○ 서류제출 시, 원본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사본 제출 가능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 서식 1>	○ 작성요령에 따라 자필 또는 PC로 기재
2.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서식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3>	○ **자필** 기재하고 서명
4. 경력증명서 1부 **※ 해당자 한함**	○ 지원 분야와 유사한 경력에 해당 ○ 경력증명서는 발급기관에서 발급 받아 제출해야하며, 재직기간·업무, 발급 담당자(연락처)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인천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 경력 여부는 제출 제외**
5. 자격 및 면허증 사본 1부 **※ 해당자 한함**	○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제출하며, 법령에 따라 가점 부여
6.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취업취약계층 증명서 1부 **※ 해당자 한함**	○ 원본 제출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별지 서식 4>	○ 제출한 채용 서류 반환을 원할 시 작성

※ 합격자는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①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 1부

② 건강검진 확인서 또는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6개월 이내 발급분) 1부.

9. 서류전형 가산점 종류 및 대상자 안내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적용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문의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 및 가점비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044-202-3255)

○ 취업취약계층 세부기준: ‘붙임 1’ 참고

○ 가산점 적용 자격 및 면허증

수산양식기능사,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양식(산업)기사, 기술사
5 %	10 %

○ 가산 특전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취업취약계층 가산점은 유리한 사항 1개만 적용받을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취업취약계층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가능함.

10. 기타 참고사항

○ 본 시험공고는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즉시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에 변경 공고함.

○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응시자가 채용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수행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인원 중 일부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전 합격자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 결원 보충이 필요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 자원조성팀(032-440-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 1>

응 시 원 서

1. 공통 사항			
지원분야		접수번호	< 미기재 >
성명	(한글)		
연락처	(본인휴대폰) (비상연락처)	전자우편	
생일			
주소			
지원 분야	☐ <수산종자 생산방류>, ☐ <지역특산품종 양식기술 연구>		
가점 사항 여부	☐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 5% ☐ 10%
	☐ 장애인, ☐ 저소득층,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2. 우대 사항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서식 2>

자기소개서

지원분야		성 명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타사항)			
년 월 일 작성자 : (인)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과 실적 등을 위주로 작성

. 분량은 A4용지 1장 내지 2장 이내로 작성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서식 3>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응시자 본인확인, 합격통지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선택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개인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응시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채용자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유합니다.

□ 개인정보 3자 제공내역

· 해당사항 없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본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장 귀하

<별지 서식 4>(서류접수 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원하시면 작성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1 취업취약계층의 세부기준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 이하**인지 확인

②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 20세~만35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⑥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여부 확인,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⑦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⑧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⑩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가족관계등록부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⑫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연령대 별 우대대상의 범주 및 확인방법 》

① 만 55세 이상 장년층 : 참여시작일 기준 만 55세 이상자

② 청년층 : 참여시작일 기준 만 15세～만34세인 자